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7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과장 이종석(044-203-4370), 이정민 사무관 (4371)

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기술개발과 서비스디자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21. (월) 입법예고 함.

○ 산업디자인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함.

○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와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의 대가기준 마련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디자인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스타일링: styling)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개정안 제2조)

□ 또한,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함. (개정안 제5조의 2)

○ 그동안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이 없어 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해 산업디자인 발전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함.

○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발주 시 대가기준이 마련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외에도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개정안 제5조),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대상도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함.(개정안 제6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0일의 입법예고(7.21~8.30)를 통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됨.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정민 사무관(☎ 044-203-43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27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과거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등에서 벗어나 최근 기술개발 및 서비스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인 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여 산업디자인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 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수립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계약과 관련한 대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저가 발주되는 사례가 많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하여 산업디자인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을 전문기관이 수립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6조)

제2조의 산업디자인의 범위가 서비스디자인까지 확대되는 경우 우수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범위에 서비스상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마.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벌칙 규정 삭제 (안 제6조, 제7조, 제19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품 및 선정 당시와 동일하지 않은 상품 등에 대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위반시 벌칙규정 등은 필요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벌칙 등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생활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jmlee10@motie.go.kr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